

2020년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R&D인력 확보 애로 해소 및 신진여성연구원의 산업 R&D분야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0년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안혜연

1. 사업 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여성R&D인력 채용 및 역량강화 지원으로, 산업현장의 신진 여성연구원 진출 촉진 및 역할 증대

2. 신청 자격

가. 지원 인력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 인력으로, 공고일 기준 지원 자격 취득 후 5년 이내의 여성
- ※ 2020.8월 졸업예정자 포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 나. 「고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대학원
 - 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 ※ 의학계열 또는 산업 디자인 분야의 학위 소지자인 경우 연구개발인력으로 채용 시 신청 가능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공계 계열에 한함
- ※ 인력이 경력이 없어도 사업 신청 가능

나. 지원 기업

- 사업신청일 기준, 연구소(연구개발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연구소기업, 이노비즈, 벤처기업,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포함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보유 기업 신청가능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연구소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설립한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 연구개발서비스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의해 연구개발서비스 업자로 인정받은 기업

- 기업별 총 2명까지 지원인력 신청 가능

3. 지원 개요

가. 지원 기간: 2020년 8월 1일 ~ 2021년 1월 31일(6개월)

나. 선정 규모: 50명 이상

다. 지원 내용: 신진여성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인력의 인건비 일부 및 교육훈련 지원

- 인건비 지원: 기업에 지원인력당 1,000만원(약 166만원/월, 총 6개월) 지원

※ 기업은 지원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2,4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

* 기준연봉: (기본급+월정액수당)×12개월, 상여 포함, 퇴직금 제외

※ 지원기간 종료시까지 최초 선정인력 고용 유지 시, 추가 지원금 지급 예정

- 교육 지원: 신규 채용 신진여성연구원 대상으로 교육훈련 지원

※ 지원기업은 지원인력이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① (필수) 연구역량 강화 교육 지원(WISET 제공, 1개 이상 수료)

※ 지원인력 선정결과 발표 후 7월 중 선정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예정

② (선택) 전문기술 교육비 지원: 최대 300만원/인(예산한도 내)

③ (선택) 학위과정 실비 지원: 직무관련분야, 최대 500만원/인(예산한도 내)

라. 지원 조건

- 2020.01.01.~2020.08.01. 기간 사이에 채용을 했거나 채용 예정인 경우
 - ※ 정부지원금은 2020.8월 급여부터 지원

4. 신청 방법

가. 신청 기간: 6월 1일(월) ~ 6월 30일(화)

나. 신청 방법: WE두드림 사이트(www.wiset.or.kr/wedodream)에서 온라인 접수

- ※ WE두드림 접속 및 로그인 → 배너의 신청버튼 클릭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 기업과 채용(예정)인력 모두 사업 신청을 완료해야 함**

다. 제출서류

- 신청기업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1	기업 신청서	- [서식1호] ※ 날인 필수	필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3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서 - 벤처기업 확인서 - 이노비즈 확인서 - 연구소기업 등록증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 해당 서류 중 택1하여 제출	필수 (택1)
4	연구개발인력 현황	- [서식3호] ※ 날인 필수	필수
5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2017년, 2018년, 2019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발급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원본/날인) 필한 재무 제표만 인정 -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설립 이후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2019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017년 및 2018년 재무 제표(회계감사보고서) 제출	필수
6	- 중소기업 확인서 - 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 서류 중 택1하여 제출	해당 시
7	우대 가점 증빙서류	- 가족친화인증서 사본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사본	해당 시
8	기타	- 기업 재산권관련 서류(특허등록 및 출원증빙자료 등) 사본	해당 시

※ 인증서류 및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신청인력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1	인력 신청서	- [서식2호] ※ 날인 필수	필수
2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신청인력의 최종학위 졸업증명서 또는 산업기사 (또는 그 이상 자격의) 자격증 사본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수
3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발급 ※ 개인 로그인→증명원 신청/발급→보험구분 고용, 조회구분 사용 선택 →조회→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출력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개별사업장) 또는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 불인정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공고일 이전 발급본 불인정) - 화면 캡쳐본 불인정 - 채용예정인 경우 선정 후 협약 시 제출	필수

5. 선정절차 및 평가

가. 평가기준 및 방법

- 요건심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평가 기준 및 방법 ※ 선정평가 심사를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절차	평가 기준 및 방법																												
요건심사	<p>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기본 자격요건의 부합여부 심사</p> <p>○ (심사항목) 신청자격 부합성,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 검토 ○ (심사결과 조치) 신청내용이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p>																												
선정평가	<p>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여부 서면평가</p> <p>○ (평가방법)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하여 서면평가 실시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기업 탈락, 고득점 순으로 선정(총 50명 이상) 석사 및 박사 학위자 30% 이내 선발</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지표</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기업</td> <td>경영· 재무역량</td> <td>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활동성 등에 대한 재무 건전성</td> <td>20점</td> </tr> <tr> <td rowspan="4">연구개발 역량</td> <td>연구장비·시설·공간 등 연구인프라 보유 정도</td> <td rowspan="4">20점</td> </tr> <tr> <td>산업재산권 및 연관 기술/연구과제 실적 보유 정도</td> </tr> <tr> <td>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실적(최근 3년간)</td> </tr> <tr> <td rowspan="4">인력활용 계획 우수성</td> <td>사업성과의 실현 가능성</td> </tr> <tr> <td>인력 활용 및 기술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td> <td rowspan="3">20점</td> </tr> <tr> <td>사업수행 계획 및 수행능력 -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 활용계획의 실현 가능성</td> </tr> <tr> <td>인력 매칭 평가</td> </tr> <tr> <td>인력</td> <td>담당 업무(연구분야)와 전공 일치도 개인의 R&D 분야 발전 가능성</td> <td>30점</td> </tr> <tr> <td>우대가점</td> <td>정규직 채용, 지방소재 기업 등</td> <td>10점</td> </tr> <tr> <td></td> <td>합계</td> <td>100점</td> </tr> </tbody> </table>	항목	지표	배점	기업	경영· 재무역량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활동성 등에 대한 재무 건전성	20점	연구개발 역량	연구장비·시설·공간 등 연구인프라 보유 정도	20점	산업재산권 및 연관 기술/연구과제 실적 보유 정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실적(최근 3년간)	인력활용 계획 우수성	사업성과의 실현 가능성	인력 활용 및 기술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20점	사업수행 계획 및 수행능력 -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 활용계획의 실현 가능성	인력 매칭 평가	인력	담당 업무(연구분야)와 전공 일치도 개인의 R&D 분야 발전 가능성	30점	우대가점	정규직 채용, 지방소재 기업 등	10점		합계	100점	
항목	지표	배점																											
기업	경영· 재무역량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활동성 등에 대한 재무 건전성	20점																										
	연구개발 역량	연구장비·시설·공간 등 연구인프라 보유 정도	20점																										
		산업재산권 및 연관 기술/연구과제 실적 보유 정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실적(최근 3년간)																											
인력활용 계획 우수성		사업성과의 실현 가능성																											
	인력 활용 및 기술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20점																											
	사업수행 계획 및 수행능력 -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 활용계획의 실현 가능성																												
	인력 매칭 평가																												
인력	담당 업무(연구분야)와 전공 일치도 개인의 R&D 분야 발전 가능성	30점																											
우대가점	정규직 채용, 지방소재 기업 등	10점																											
	합계	100점																											

○ 우대 사항

- 우선 지원: 석사 및 박사 학위자 30% 이내 선발
- 우대 가점(총 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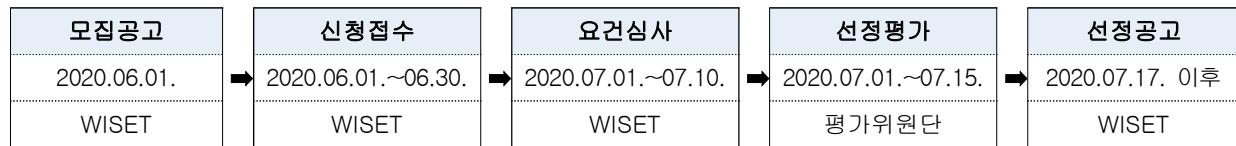
구분	우대 사항	증빙 서류	배점
1	지원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	-	2점
2	지방소재(서울, 인천, 경기 외의 지역) 기업	인력 균무지 기준	2점
3	가족친화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서	2점
4	12대 신산업 분야 기업	-	1점
5	2019년 K-Girls' Day 참여 기업	WISET에서 자체 확인 예정	1점
6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1점
7	청년친화 강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서	1점
합계			10점

- ※ 각 우대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12대 신산업 분야: 전기·차율차, 스마트 친환경 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 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신산업,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나. 선정 결과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wiset.or.kr) 공지사항에 공지

다. 선정절차 및 일정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지원 선정된 기업 및 인력은 신청 자격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은 지원인력의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
-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 및 인력은 지원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현황에 대한 지원센터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함

- 사전 지원대상 제외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기업 및 인력의 신청자격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등
- 이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내역 확인방법 : 워크넷(www.work.go.kr) → 마이페이지 홈 → 온라인 신청관리 → 정부지원일자리 탭 선택 → 일자리 참여 내역 조회(일자리 신청 내역 아님, 지원인력 개인이 조회 가능, 협약 시 증빙서류 제출)
 - ※ 교육훈련 참여 및 참여기간이 종료된 건은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 지원 인력은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지원기업은 인력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1개 이상(필수) 수료하도록 지원하고, 인력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지원기간 중 지원인력 퇴사 시, 잔여 지원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하여 매칭조정심의를 거쳐 대체인력 지원 가능
-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인력은 상호간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기업은 인권경영 이행 및 조치에 협조해야 함
- 위의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업 협약 해약이 가능함.

7. 문의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정책사업실 R&D경력복귀지원팀
 - 02-6411-1011, 1064 / hhkim@wiset.or.kr, jhlee@wiset.or.kr
-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문의 바랍니다.

참고 1

사전지원제외 대상

□ 신청 기업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항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기업
- 다음의 ‘신청제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제외 기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 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 인력

- 한국인(한국국적)이 아닌 자
- 동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인력(중도협약해약자 포함)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인력
- 신청 기업의 대표자가 참여인력으로 신청한 경우
- 최종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2020.06.01. 이후 신청기업에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 신청 기업의 대표(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친족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기타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동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참고 2
2020년 사업 추진 절차

절차	내용	수행주체
사업 공고	· 신규 지원 기업 및 인력 모집 공고	WISET
↓		
사업 신청 접수	· 신청서 접수(온라인) · 기업 및 인력 모두 신청 · www.wiset.or.kr/wedodream	기업 및 인력
↓		
선정평가	· 선정평가 진행 및 결과 통보	WISET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 선정 기업 대상 협약체결 진행 후 사업비 지급	WISET /지원기업/지원인력
↓		
지원인력 교육 및 교육비 지원	· WISET 제공 교육훈련 1회 이상 필수 수료 · 전문기술교육비 및 학위과정 실비 지원 (예산한도 내)	WISET/지원인력
↓		
수혜자 간담회	· 지원인력 대상 간담회 개최	WISET/지원인력
↓		
현장점검	· 사업수행 중간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 신규 지원대상 전수 시행	WISET /지원기업/지원인력
↓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접수 ·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정산 실시	WISET
↓		
추가 지원	· 추가지원 대상 추가지원금 지급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유동적)	WISET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별도 안내 예정